

中小企業의 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稅制支援方案

金 珍 洙*

차 례

I. 서 론

II.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일반론

1. 기업 구조조정의 개념
2.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과 조세
3.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III.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1. 중소기업의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 중소기업간 통합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6.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IV.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개편방향

1.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2.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평가 및 정책방향

V. 결 론

* 韓國租稅研究院 先任研究委員, 經濟學博士

I.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998년 1월 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벌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권의 책임 강화 등을 이행하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재벌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행해졌던 것이다.¹⁾

과거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구조조정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정부는 기업이 주식, 부동산, 자산, 영업권 등 활발한 거래를 기초로 합병·분할 등 조직재구축과 사업조정·재무구조개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구조조정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시장전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업종다각화, 업종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경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도·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중소기업이 조직을 재구축함에 있어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냐에 따라 그 활성화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거래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의 거래 및 처분 등과 관련한 세금문제를 감안한다면, 결국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금의 과중이 구조조정의 활성화

1)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2단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안(2000.9.25)에 의해 행해졌는데, 이 안의 단기 목표는 금융 경색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중장기 목표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정립하여 안정적 성장 기반을 공고화하는 것이었음. 2단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안(2000.9.25)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규석·김창욱,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소론”, 『법학연구』 제2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52~153면을 참고하기 바람.

화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먼저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의 일반론을 개관을 해 본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세제가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일반론

1. 기업 구조조정의 개념

기업의 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reorganization)은 기업이나 기업집단 또는 기업의 소유주가 경제 및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조직변경·사업조정·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즉,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내부기구 및 기업 형태는 물론 생산·판매·유통과 관련된 경영구조 그리고 부채와 자산의 조달 및 운용방식,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한다.³⁾

2.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과 조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세제에 대해 이론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성격상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조조정의 핵심이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유형은 구조조정의 핵심이 자산 또는 지분을 처분

2)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조세지원의 중요성은 김철권, “조세관계법제 정비의 현황과 전망 - 기업구조조정세제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16호, 한국법제연구원, 1999; 한만수,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 『조세법연구』 제5권, 한국세법연구회, 1999, 그리고 김광윤, “구조조정촉진제도에 대한 세무론적 평가”, 『세무학연구』 제15호, 한국세무학회, 2000에서도 논의하고 있음.

3) 장태평,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광교아카데미, 1999, 3면.

하거나 또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우이다.⁴⁾

첫 번째 유형의 경우는 기업이 사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 사업내용, 자본구성, 사업용 자산의 구성, 사업장소 등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재산을 취득하여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재조직은 같은 기업이 변경된 회사형태로 계속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 유형에서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부동산양도 등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자산증여, 채무인수·변제 등을 통해 재무구조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도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증여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과세문제도 발생한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조세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세제는 주로 첫 번째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를 의미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조세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첫 번째 유형의 구조조정에서는 거래과정에서 실현되는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이연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장부상 양도차익이 실현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하여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연된 과세는 나중에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과세되므로 장기적으로 과세기반이 크게 침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의 구조조정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므로 양도차익이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이연

4)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진수·안종석,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에 따른 현행 구조조정지원세제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123~125면 참조.

이나 이월과세는 곤란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로 세액감면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의 과세기반을 잠식하여 조세의 공평성(fairness)을 저해한다. 둘째, 조세지원제도의 남용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인해 경제활동이 왜곡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특히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매각 지원 등은 다분히 경영이 부실한 기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두 번째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두 번째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조세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단시일 내의 구조조정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다양하게 도입하였던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1999년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2001년에 상당히 정리되었다. 이 때 대체로 첫 번째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은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되었고,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조세지원은 폐지되거나 필요에 따라 시한이 연장되었다.

3.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에 대해서 세부담을 가능한 추후로 연기하거나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이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구조조정전문기구에 대한 세제로 분류될 수 있다.⁵⁾

(1) 조직변경에 대한 세제

조직변경이란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조직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을 의미한다. 기업의 조직을 변경할 경우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청산과 신규 조직의 자산 취득 및 등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폐지 또는 청산되는 조직의 자산양도차익, 청산소득 등에 대한 과세로는 신설되는

5) 이와 같은 분류는 장태평, 전계서, 15~16면의 분류를 따른 것임.

조직의 자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다. 구조조정세제 중 조직 변경에 대한 세제란 이와 같이 기업의 조직 변경시 발생하는 기업의 거래세적 성격의 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뒤로 연기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변경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업조정에 대한 세제

사업조정이란 기업의 조직을 변경시키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형태를 의미한다. 기업양수도,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재래사업장의 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조정의 경우에도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신규자산취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주 등이 기업의 부채를 인수·변제하거나 채권자(금융기관)가 부채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문제, 인수·변제 또는 감면액의 손금산입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조정에 대한 세제는 사업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자산취득에 따른 과세, 채무면제, 인수 및 변제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의미한다.

(3)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란 부채비율의 감소를 의미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이란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는데 관련된 조세지원을 의미한다. 부채상환, 자산매각, 기업주 재산 출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구조조정 전문기구에 대한 세제

구조조정 전문기구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특수 목적의 기구들로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등과 같은 형태의 전문기구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전문기구들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기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실체라기보다는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통과기관(pass-through entity)의 성격이 강하므

로 법인세 과세문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따라서 구조조정 전문기구에 대한 과세제도란 구조조정 전문기구의 법인소득 및 이들 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구조조정 전문기구의 자산취득 및 양도에 따른 과세제도를 의미한다.

<표 1> 기업 구조조정 세제

구조조정의 내용		세제지원의 내용	조문
조직변경	합 병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합병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49조 조특법 제47조의 2 조특법 제47조의 3
	분 할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 제49조
	현물출자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 조특법 제38조의 3
	중소기업통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 제31조
	법인전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 제32조
사업조정	기업양수도	주주의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9조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42조
	주식교환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 조특법 제46조의 2 조특법 제46조의 3 조특법 제47조
	사업전환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33조(폐지) 조특법 제34조(폐지)
	재래사업장이 전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35조(폐지)
	부채상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조특법 제37조(폐지)
재무구조 개선	자산매각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43조 조특법 제43조의 2
	기업주채산출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제40조 조특법 제41조

구조조정 내용		세제지원 내용	조문
구조조정 전문기구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4조
	유 동 화 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특법 제56조(폐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5조
	자기관리부동 산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5조의 2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3조(폐지)

주: ()안에 폐지로 표시된 조문은 2001년말 세제개편시 폐지되었음.
 자료: 영화조세통합, 『2005 조세통합』을 참조하여 작성함.

III.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제II절에서는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구조조정전문기구에 대한 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 절에서 논의한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구조조정전문기구에 대한 세제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소기업청이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세제라고 분류하고 있는 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⁶⁾

1. 중소기업의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말 까지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증권업협회에 2002년말 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30%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⁷⁾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 조세지원 제도안내』, 2002의 분류를 따랐으나,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제외하였으며,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3)는 2003년말 세법개정에 신설되었으므로 추가하였음.

7)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간 통합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⁸⁾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⁹⁾¹⁰⁾ 중소기업간의 통합과 관련하여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¹¹⁾

①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②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며,¹²⁾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¹³⁾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¹⁴⁾¹⁵⁾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

8)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9)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10) 소멸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인 경우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15) 상법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는 그 절차 등이 복잡하여 사실상 법인설립의 효과를 가

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¹⁶⁾

① 전환전 개인사업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일 것

②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며,¹⁷⁾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¹⁸⁾

4.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제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¹⁹⁾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²⁰⁾ 신설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내국법인의 취득가액을 신설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²¹⁾

저오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직의 변경일 뿐, 재산이 처분되거나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지원을 함.

16)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제5항.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항.

$$\text{압축기장충당금} \times \frac{\text{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text{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내국법인이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후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²²⁾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며,²³⁾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²⁴⁾

5.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함)이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²⁵⁾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²⁶⁾

①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 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6.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25) 법인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함.

26)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함)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²⁷⁾

①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다만 지배주주 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당해 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IV.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개편방향

1.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1) 상시 구조조정세제의 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2001년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세제의 개편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조조정 세제의 성격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인데도 아직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는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세제의 성격이 자산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거나 또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한시적인 지원 후에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원제도 중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과 한시적인 지원 후에 폐지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²⁸⁾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기업이 조직, 사업내용, 자본구성, 사업용 자산의 구성, 사업장소 등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려는 구조조정 세제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변경된 회사형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거래비용을 높이게 되며 결국 이로 인해 조직변경이 활성화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28) 김진수·안중석, 전거서, 125~127면 참조.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직개편과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지원방법은 조세감면의 형태보다는 과세이연의 형태가 더 타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조세감면은 영구히 양도차익 등에 대해 과세할 기회를 잃는 것이지만, 과세이연은 단기적으로는 조세감면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지원 후에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 등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자산증여, 채무인수·변제 등을 통해 재무구조 등을 개선하려는 구조조정인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구조조정은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므로 양도차익이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을 구조조정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영원히 과세할 수 없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지원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비과세 재조직의 정비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뿐만 아니라 인수까지도 포괄하여 조직개편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비과세 재조직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과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과세되는 조직개편과 과세되는 조직개편이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조직개편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과세문제 마다 적용요건을 조금씩 달리함에 따라 동일한 재조직이 세부적인 과세문제별로 비과세되기도 하고 과세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²⁹⁾ 또한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요건이 너무 느슨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재조직 등 비과세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재조직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2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M&A의 현황과 시사점』, 2005 참조하기 바람.

위해서는 세법상 비과세 재조직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요건을 강화하고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재조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조직과 관련되는 각 과세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세제의 확립

과거 적대적인 M&A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최근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대적인 M&A에 대한 법적규제를 완화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대적 M&A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에서도 적대적 M&A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³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주식대량소유제한, 강제 공개매수, 외국인지분제한, 자기주식취득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적대적인 M&A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적대적인 M&A를 제한하는 각종 법적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최근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소비린의 자회사인 크레스트가 SK(주)의 주식을 집중매입하면서 적대적 M&A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최근 M&A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적대적 M&A가 경제,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기업의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면 기업경영의 외부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주주의 이익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경영방식이 정착되고, 또한 기업청산을 통한 부실기업의 퇴출 보다 고용인력의 승계와 이미 투자된 생산시설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실기업의 퇴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 반면 R&D 등 중장기 경영목표가 무시되고, 과도차입에 의해 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적대적 M&A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30) 현행 세법에서도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요건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음. 따라서 비과세 재조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따라 따로 적용되는 기준을 폐지하고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요건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주장은 합병과 관련한 김진수·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에서 제기되고 있음.

M&A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규제 및 과세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투기자본이 공격적 기업인수를 시도하고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뒤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부족하다. 적대적 M&A를 제한하는 각종 법적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매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으며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매수자와 관련하여 기업인수 자금, 그린메일의 수령 등에 대한 세무상 취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방어자와 관련하여 임원 및 직원퇴직금, 그린메일의 지급금, 포이즌필(poison pill) 등에 대한 세무상 취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³¹⁾

따라서 적대적 M&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기업인수 자체를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규제 및 과세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권 경쟁시장에서 매수자와 방어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법적규제 및 과세제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평가 및 정책방향

(1)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도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소기업도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은 원칙적으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01년 세제개편에서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등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

31) 적대적 M&A 과세문제는 김철권, 『적대적 기업인수와 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을 참조하기 바람.

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시장전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업종다각화, 업종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경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을 재구축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에 추가하여 거래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성격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인 경우에는 상시전환체제로 전환하고, 구조조정의 성격이 자산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거나 또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인 경우에는 시한이 끝나면 시한을 연장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별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평가 및 정책방향

1) 중소기업의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 제도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준비금을 계상시 당해 준비금을 소득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손금 산입한다는 규정으로 1999년에 신설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이 제도에 의해 손금산입을 허용 받은 금액은 2002년에 95억원, 2003년에 94억원이었으며, 또한 2004년에는 1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³²⁾

이 제도는 코스닥시장의 고위험·고수익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등록법인이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 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여 법인세 경감과 경영손실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려는 것이다. 이 제도를 구조조정 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조조정의 내용을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구조조정전문기구 등으로 분류할 때 어느 부분에도 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 또는 이연해 주는 다른 구조조정 지원세제와는 달리 사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제도는 구조조정 지원세제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32) 재정경제부,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2004 참조.

다른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을 다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하거나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간 통합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이 제도는 1981년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통합시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구조조정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지출보고서에 이 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실적이 보고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중소기업의 통합시 종전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중에서 조직변경과 관련이 있으나,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합병이 법인과 법인의 통합을 지칭하는 반면, 통합은 개인기업과 개인기업의 통합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의 통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성격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인 경우 상시전환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는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 제도는 1981년 조세감면법규제법 제45조로 신설되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

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였다. 이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 대상과 지원내용이 일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제도를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로 보아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세지출보고서에 이 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실적이 보고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중에서 조직변경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시 구조조정세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전환이라는 것은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므로 앞 절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성격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상시구조조정세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이 제도는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에 신설되었다. 이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세제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이 현행 조문과 같이 바뀌었다.

이 제도에 의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가 대기업 보다는 중소

기업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설립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세지출보고서에 이 조항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실적이 보고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중에서 조직변경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시 구조조정세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은 기업분할의 일종이므로 앞 절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성격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에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상시구조조정세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이 제도는 2003년에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법인기업에게 합병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의 법인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는 1년 이상 영위사업 합병에 과세특례를 주었으나 동 조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등 비용지출이 선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손익발생 시기가 아닌 비용지출 시점부터 사업영위 기간을 기산하며, 또한 벤처기업은 규모가 작아 일반법인에게 합병되는 경우 주식의 10%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식취득요건을 3%로 완화하였다.

이 제도는 최근에 도입됨에 따라 아직 조세지출보고서에 실적이 집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알 수는 없다. 이 제도에 의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벤처기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합병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을 다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하거나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술수준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을 감안하여 이 제도를 정책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중에서 조직변경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시 구조조정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문제는 앞 절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성격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현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이 제도는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자(노동조합을 포함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자가 당해 부도중소기업을 인수하여 회생하고자 할 때 양도에 따른 비용을 다소 감소시켜 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이 행해지는 이유는 부도중소기업의 회사 내용을 잘 아는 사용자가 부도중소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부도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조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기대와는 달리 이 조항에 의한 2002년, 2003년, 2004년의 증권거래세 면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2001년부터 한시적 구조조정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구조조정 세제도 전반적으로 개편되었으나, 구조조정 세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변경에 대해 아직까지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전문기구에 대해서도 아

직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는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와 별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는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중소기업도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시장전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업종다각화, 업종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경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을 재구축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를 그대로 따르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추가하여 거래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성격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인 경우에는 상시전환체제로 전환하고, 구조조정의 성격이 자산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거나 또한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인 경우에는 시한이 끝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제어 기업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세제

Reform Proposal for the Taxation on Corporate Restructuring :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im, Jin-Soo*

The tax incentives fo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re basically provided to all businesses that meet the given objective conditions. Accordingly, the tax system o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be applicable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ransaction costs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ght be higher than those of large enterprises because of the lack of operation resources that promote the market conversion, improvement in productivity, making into a high value-added business, diversification of business, and conversion of business. Thus, the corporate restructur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hould follow the taxation on corporate restructuring in principle, but could additionally receive the tax incentives for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However, if, even in this case, the character of corporate restructuring is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division, investment in kind, the taxation on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convert into ordinary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of corporate restructuring is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r share, 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structure, the tax incentive system on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be abolished except unavoidable cases.

KEY WORDS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Restructur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ation on Corporate Restructuring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h.D. in economics